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1995. 4. 3. 제134호

개정 2002. 7. 6. 제385호

2010. 3. 5. 제513호

2012. 3. 28. 제59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 재계약임용 및 승진임용되는 전임교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하여 임용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자료) 전임교원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재임용 심사평정표 (별지 1호 서식)
2. 임용기간내의 논문등 연구실적물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3조(심사기준) 재임용심사는 당해 교원에 대하여 임용기간 중에 다음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평정항목별 평정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한다.

1. 교육
2.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창작활동과 학술활동
3. 가. 학생생활 지도능력과 실적
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과 실적
4.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내·외 봉사활동

제4조(재임용 심사평정표) ①재임용심사평정은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심사자료에 의한 객관적 근거에 의거 교학처장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고 총장이 최종 확인한다.
②전임교원의 재임용평정은 교수재임용 심사평정기준에 의하며 C 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뒷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실적심사)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실적심사는 한국체육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별표1의 교원연구실적심사기준에 의한다.

제6조(평정표 제출 및 심의) 재임용심사평정표는 연구실적등 심사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인사위원회에 심의 요청한다.

제7조(기간제 임용의 기준) 심사평정상 평정자와 확인자의 평점을 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70점 이하인 자는 재임용에서 제외한다.

제8조(부적격자 소명절차) ① 피평정자는 평정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5일 안에 총장에게 제출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피평정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②항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는 총장은 특별심의회를 구성하여 재심하게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제8조의2(특별심의회 구성) 특별심의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각 학부(과)장과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95. 4. 3 제1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6.14 제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14 제19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 9.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6학년도 제2학기 교수신규채용,1996.9.1자 재임용, 1996. 10. 1자 승진임용 예정자의 연구실적물은 현행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1999. 7.15 제2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 제3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5제51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8 제59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재임용 심사 평정표

평정 대상자	직위 : 직급 : 성명 :	확인자			평정자	(인)			비고
		평정자				(인)			
구분 영역	평점항목	배점			실적 및 의견	배점			비고
		A	B	C		A	B	C	
1. 교육	①수업 이행실태 및 근무 상황	15	13	10					
2. 연구 및 창작 활동	①연구실적물의 양	25	20	15					
	②연구실적물의 질	10	8					*	
	③창작활동 및 연구와 관련된 활동	5	3	2				*	
	④학회활동	5	3					*	
3. 학생 지도 활동	①학생생활 지도실적 (이론분야)	10	8	5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지도능력과 실적 (전문실기분야)								
	②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	5	3	2					
4. 기타 사항	①학위소지	5	3	2					
	②교원으로서의 품위	5	3					*	
	③학내 인화 관계	5	3					*	
	④대학발전을 위한 기여 및 봉사	5	3					*	
	⑤상 별	5						*	

※ "C"평정을 하는 경우에는 뒷면에 구체적인 사유 명시